

손해보험설계사 공통 핵심특강 1강 모집종사자의 이해

강사 : 백영

1편, 2편 보험이론, 법규 목차

①

□ 공통사항

- 제1강 : 모집종사자의 이해 4문제
- 제2강 : 손해보험 기초 이론 2문제
- 제3강 :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제
- 제4강 :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4문제
- 제5강 :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4문제

보험모집관련 법규

①

□ 보험의 모집

- 중개 : 보험설계사(내부조직), 보험중개사(독립된 외부조직 ; 금융감독원 등록)
- 대리 : 보험대리점(독립된 외부조직) ;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
계약체결권, 고지의무수령권, 보험료 수령권

□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

-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
- 보험회사의 임직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, 감사위원 제외)

□ 보험설계사

-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
- 금융위원회 등록(원칙) ; 손해보험협회 위탁(금융감독원X)
- 시험합격(유효기간 1년) + 등록교육
- 손해보험 업무 1년(3년 이내) + 교육

보험모집관련 법규

①

□ 등록제한
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(미성년자 0)
- 파산선고 후 미복권
- 보험업법에 따른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보험료, 대출금 등을 유용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□ 보험설계사 등록, 말소

- 등록 : 금융위원회 등록, 손해보험협회 위탁
- 말소 : 본인 직접말소도 가능 ; 일상전속 주의로 말소 후 이직
- 위촉, 해촉 :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

□ 교차모집 보험설계사

-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; 일상전속주의 예외
- 제3보험 포함
- 고객니즈 충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

보험모집관련 법규

①

□ 보험대리점

- 일사전속 비적용(생보, 손보 겸업 가능)
- 종목별 : 생명, 손해, 제3보험
- 유형별 : 전속(1사), 비전속(회사수 제한 없음)
- 업종별 : 전업(1업), 겸업(생보, 손해, 제3업)
- 주체별 : 개인, 법인

- 등록 : 시험 + 연수(2년 이내)
경력 2년(4년 이내) + 연수

- 법인대리점 : 등록요건 갖춘 자 1명 이상 (100명 이상 법인은 1/10 이상)
- 금융위원회 등록 : 위탁 받은 손해보험협회 등록

□ 금융기관보험대리점

- 은행
- 금융투자업자
- 신용카드회사(겸영여신업자 제외)

재무설계와 보험

①

□ 재무설계

- 생애 전반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
- 개인의 특수성 반영

□ 재무설계의 필요성

- 고용불안과 조기퇴직
- 다양해진 금융상품
- 저금리 기조
- 자기책임 강조
-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고조

□ 재무설계 단계

- 목표확인, 우선순위 파악
- 정보 수집
- 고객정보 분석 및 재무상태 진단
- 전략의 개발 및 실천계획
- 정기 리뷰 및 재무진단
- 재무계획 재평가 및 수정

보험모집 프로세스 6단계

①

□ 가망고객 발굴

- 연고 : 기본적인 방법, 증권 및 약관전달 생략 불가
- 소개, 개척, 정보리스트

□ 접근 : 방문 및 면담

□ 정보수집

- 5대 필요자금 : 생활비, 양육비, 주택구입비, 노후자금, 긴급예비자금
- 장례비 X

□ 가입권유

- 계약체결(Closing) : 끝이 아닌 새로운 고객서비스의 시작

□ 소개확보

- 기고객의 소개로 가망고객 확보
- 정확한 보험가입 최종 확인 및 완전판매(증권전달)

우수인증 설계사 제도

①

□ 우수인증설계사

- 대상 : 보험설계사 및 전속 개인대리점
- 근속기간 : 동일회사 3년 이상
- 인증기간 : 6월부터 다음해 5월(1년간)
-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無
- 인증도용 : 2년간 인증신청 금지
- 혜택 : 명함에 로고, 교육지원(불참해도 무방), 수당 X

손해보험설계사 공통 핵심특강 2강

손해보험 기초이론

강사 : 백영

1편, 2편 보험이론, 법규 목차

②

□ 공통사항

- 제1강 : 모집종사자의 이해 4문제
- 제2강 : 손해보험 기초 이론 2문제
- 제3강 :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제
- 제4강 :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4문제
- 제5강 :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4문제

위험과 보험

②

□ 위험

- 사고발생의 불확실성

□ 위험 관련 개념

- 위태 → 사고 → 손해
현실화 결과
- 위태
 - *물리적 위태 : 예) 빙판, 공장 내 기름걸레
 - *도덕적 위태 : 예) 고의
 - *정신적 위태 : 예) 부주의, 졸음운전
- 사고 :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
- 손해 : 사고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

위험과 보험

②

□ 위험

- 주관적 위험 : 개인에 따라 정도가 상이
- 객관적 위험 : 대수의 법칙에 근거, 통계측정이 가능

□ 순수, 투기위험

- 순수위험 :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 ; 대수의 법칙 적용
상해, 사망, 화재, 교통사고 등 ; 보험화 가능
- 투기위험 : 손해와 이익이 상존
주식투자, 사업, 도박 등 ; 보험의 대상 X
- 보험가능 위험 : 순수위험 중 보험인수가 가능한 위험
- 손해발생 객체 분류 : 인적위험(ex 생명), 재산적 위험, 배상책임위험

□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

- 다수의 동질적 위험,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
- 우연적 사고위험
-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,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
- 자연계의 이상변동이 아닌 손실 :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

보험의 이론

②

□ 보험의 정의

-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출연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제도

□ 보험의 기능

-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, 경감
- 피해자의 보호
- 신용의 보완 : 예)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

□ 보험의 성립요건

- 사고의 우연성, 불확실성
- 다수의 동질적 위험
- 보험료, 보험금의 산정

보험의 기본원칙

②

□ 위험의 분담원칙

□ 대수의 법칙 : 사고를 통계적으로 추출

□ 수지상등의 원칙 : 보험회사 관점에서 순보험료 = 지급보험금

□ 이득금지의 원칙 : 실제의 손해액 이상 보상불가(초과보험, 중복보험 시) 생명보험은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비적용

□ 실손보상의 원칙 : 보상의 기본원리

□ 비례보상의 원칙 :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적 책임주의

□ 급부,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: 보험계약자 관점(Lexis의 법칙) 사무직과 생산직 보험료 다름

보험의 분류

②

□ 상법상 분류

- 손해보험, 인보험

□ 보험업법상 분류

-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제3보험

□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

- 재물, 인신, 책임, 이익에 관한 보험
- 예) 화재, 상해, 배상책임, 기업휴지
- *기업휴지보험 : 공장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(간접손해) 보상

□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

- 의무보험 : 자동차책임보험 등
- 임의보험

보험의 분류

②

□ 보험료 납입주체에 따른 분류 : 가계, 기업

□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

- 단기 : 보험기간 1년 이하
- 장기 : 보험기간 3년 이상
- 기간 :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
- 구간 :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소 ; 적하보험, 운송보험
- 혼합 : 기간 + 구간 ; 조립보험, 건설공사보험, 여행자보험

□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분류

- 전부, 일부, 초과, 중복

□ 위험의 분담관계에 따른 분류 : 원보험, 재보험

□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

- 공영보험 : 산업재해보상보험, 건강보험, 무역보험
- 민영보험

©

손해보험설계사 공통 핵심특강 3강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

강사 : 백영

1편, 2편 보험이론, 법규 목차

③

□ 공통사항

- 제1강 : 모집종사자의 이해 4문제
- 제2강 : 손해보험 기초 이론 2문제
- 제3강 :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제
- 제4강 :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4문제
- 제5강 :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4문제

보험범죄

③

□ 보험범죄

- 보험사기방지특별법 :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대상 (미수도 처벌)
- 보험사기죄 :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이득액이 5억이상 50억미만 : 3년 이상 징역
이득액이 50억 이상 ; 무기징역, 5년 이상 징역
- 경성사기 : 고의
- 연성사기 : 우연한 사고 과잉 청구

□ 보험범죄의 특성

- 범죄의 복합성
- 범죄의 다양성 (단순성X)
- 범죄입증의 곤란성
- 범죄조직의 조직화

보험범죄 관련

③

□ 보험범죄 유형

- 교통사고를 이용 : 실행이 용이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고
- 차량도난 관련 보험범죄
- 병의원 관련 보험범죄
-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
- 강력범죄 관련 보험범죄

□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

- 보험사기방지특별법
-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- *의료기관은 외출외박 허락 기록관리 의무화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*보험회사에 외출외박기록 열람청구권 인정(환자의 동의 없이 가능)

보험범죄 관련 법

③

□ 정비업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

-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는 임의수리 금지
- 재생품 사용시 정비의뢰자에게 사전통지(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교통사고 예방

③

□ 음주운전 처벌규정

-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: 3년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
- 음주운전 상해사고시 : 1년-15년 징역 혹은 1천 - 3천만원 벌금
- 0.03% - 0.08% 미만 : 벌점 100점(면허정지 100일), 사고시 면허취소
- 0.08%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 : 면허취소
- 음주운전 2회 이상 : 면허취소

□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

- 40점 초과시 : 면허정지

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

③

□ 교통사고처리특례법

- 과실 또는 중과실로 중상해가 발생하는 경우
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

□ 도로교통법

- 난폭운전 :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
- 일반도로에서도 뒷자석 안전띠 의무화
-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갱신 : 5년에서 3년으로 단축

□ 특정범죄가중처벌법

-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
(사망 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)

©

손해보험설계사 공통 핵심특강 4강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

강사 : 백영

□ 공통사항

- 제1강 : 모집종사자의 이해 4문제
- 제2강 : 손해보험 기초 이론 2문제
- 제3강 :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제
- 제4강 :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4문제
- 제5강 :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4문제

□ 보험회사(보험자) 주요의무

-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
- *중요한 내용 : 보장개시일, 해지사유, 면책사유, 계약자의 권리의무
- 보험증권 교부 : 보험계약 효력에는 영향 없음
-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담보 : 30일 경과시 승낙 간주
- 보험료를 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도 보상
- 보험금 지급의무 :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
- *면책사유 : 고의나 중과실 / 전쟁 / 자연소모 /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

□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

- 보험계약자 : 보험료 납부의무(대리를 통한 계약 가능)
- 피보험자 :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
- 15세미만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불가
- 보험수익자 :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(인보험에서만)

□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

- 보험료 납입의무
- 계약 전 알릴 의무(고지의무)
- *고지의무자 : 계약자, 피보험자 (수익자X)
- *고지수령권자 :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인보험 보험의 (보험설계사X ; 법상)
- *고지 : 계약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질문표를 사용
- *해지권 행사 :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(무효X) 가능
- *해지권 제한 :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,
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

□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

- 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 : 직업변경, 피보험자 변경, 중복계약,
보험목적물 양도, 휴업 등(피보험자 건강X)
-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
- 손해방지의무 :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- 위험변경, 증가 통지의무
- 위험유지의무 :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 않도록 함
- * 청구권 소멸시효
- 3년 : 수익자 보험금청구권, 계약자 보험료(적립금)반환청구권
- 2년 : 보험회사 보험료청구권

보험의 목적, 보험계약의 목적

④

□ 보험의 목적 (보험에 부쳐지는 대상)

- 손해보험 : 건물과 같은 재물, 재산
- 인보험 : 생명이나 신체 (피보험자)

□ 보험계약의 목적 (피보험이익)

- 피보험이익 : 보험의 목적에 대해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 관계
손해보험에서 인정
- 피보험이익 요건(영구성)
적법성,
경제성(금전화),
확정성(장래 이익도 가능)
- 피보험이익의 효과 : 보험회사의 책임범위(계약상 최고한도X)
도박화 방지
여러 피보험이익 가능 (예 : TV도난보험, 배상책임보험)
초과보험, 중복보험의 판정 및 방지

보험료, 보험금

④

□ 보험료

- 보험료 :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
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
- 영업보험료 = 순보험료 + 부가보험료

순보험료 = 위험보험료(보험사고시 보험금) + 저축보험료(해지 및 만기환급금)

부가보험료(사업비) = 신계약비(초년도) + 유지비 + 수급비

□ 보험금

- 보험회사가 피보험자(보험수익자)에 지급하는 금액

보험가입금액, 보험가액

④

□ 보험사고 (경제성 X)

- 불확실성(우연)
- 발생가능성
- 한정성(일정한 목적, 일정한 기간 내)
- 적법성

□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

- 보험가입금액 :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; 보험료 산정의 기준
- 보험가액 : 법률상 보상의 최고액
손해보험 고유의 개념이며 손해액 산정의 기초
-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
- *전부보험(보험가액 = 보험가입금액)
- *초과보험(보험가액 < 보험가입금액) : 보험가액 한도로 실손보상
- *중복보험(보험가액 < 보험가입금액) : 다수 보험회사 계약,
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비례
- *일부보험(보험가액 > 보험가입금액) :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실손(비례)
- *공동보험(보험가액 ≥ 보험가입금액) : 둘 이상 보험회사, 실손(비례)

보험기간, 보험계약

④

□ 보험기간

- 보험기간 = 책임기간 / 보험료 받은 때 개시
- 보험계약기간 : 보험계약 성립에서 소멸까지 / 보험회사의 승낙시
- 소급보험(보험기간 일찍 시작), 예정보험(보험계약기간이 일찍 시작)
- 보험료 기간 : 보험료 산정(통상 1년) / 보험료 납입기간X

□ 보험계약

- 불요식,낙성계약 : 보험증권은 증거증권
- 유상, 쌍무계약
- 사행계약 : 보험료와 보험금의 불일치라는 요행성
- 상행위 : 영리행위 / 상법
- 계속계약 : 일정기간 지속
- 부합계약 : 약관 승인해야 성립
- 단체성 : 다수의 보험계약자
- 선의계약 : 사행성
- 기술성 : 수리적 기술 요구

보험계약 성립

④

□ 보험계약의 성립

- 계약자의 청약 + 보험회사의 승낙
- 승낙의제 : 30일 이내 낙부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봄

□ 보험계약의 변경

- 위험소멸 : 보험료 감액 청구
- 위험 변경, 증가 : 보험료 증액 혹은 해지 가능(불고지시 1개월 내 해지가능)
- 보험자의 파산 : 보험계약 해지가능

□ 보험계약 소멸

- 보험기간 만료 / 피보험이의 소멸
- 보험회사 파산 후 3개월 경과 등
- 보험계약자의 해지 : 언제든지 가능
- 보험회사의 해지 : 보험료 미납, 고지의무 위반 등 상법이나 약관에 따라

보험계약 무효, 부활

④

□ 보험계약의 무효

-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, 추인 불가(해지는 해지 시점부터)
- 계약 당시 보험사고 이미 발생(보험계약 당사자가 몰랐다면 유효)
- 사기로 인한 중복, 초과보험
- 타인의 사망을 사고로 한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
- 만15세 미만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

□ 보험계약의 부활

- 연체보험료 + 연체이자 + 보험회사 승인
- 3년 이내 가능

□ 청약 철회

-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X)
- 보험회사 3일 이내 보험료 반환 / 지체시 보험계약대출이자 가산

보험약관

④

□ 약관의 종류

- 보통약관 : 표준적 계약조항을 미리 작성
- 특별약관 : 보통약관을 일부 보완, 변경 / 보통약관에 우선 해석
- 계약자에게 동일한 거래조건 적용 : 소비자간 평등대우
- 보통약관 기재사항 : 보험금 지급사유, 보험회사 면책사유 등
보험료 납일일자 X

□ 약관해석의 원칙

-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
- 보통의미의 해석원칙
- 동충제한의 원칙 : 열거사항과 동종의 사항만을 지칭 예)그 외 기타
-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
- 수기우선의 원칙 : 필서 > 인쇄
- 유효해석의 원칙

□ 약관의 변경 및 소급효

- 소급효는 고객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

보험목적의 양도 등

④

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

- 타인이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 /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무관
예) 자녀를 위한 보험
- 계약자의 지위 : 보험계약해지권 가짐 / 피보험자의 동의, 보험증권 소지요
보험금청구권 X
-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피보험자도 보험료 납부의무 가짐

□ 보험목적의 양도

- 보험계약 대상 목적물의 매매, 증여 등
- 보험계약상의 권리,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 / 회사에 통지필
- 보험회사의 동의로 승계 : 선박보험, 자동차보험

□ 보험자 대위

-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지급금 내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(지급시)
- 잔존물 대위 : 보험의 목적의 전부 멸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
- 청구권 대위 :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(보험금 일부 지급시도 가능)

보험회사 관련 법률

④

□ 보험사업의 허가

-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(금감원 X)
- 법인 : 주식회사, 상호회사, 외국보험사
- 허가신청서류 : 정관, 3년간의 사업계획서, 기초서류
기초서류 : 사업방법서, 보험약관(보험증권X), 보험료/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
- 허가취소 : 금융위원회 청문 필요

□ 보험업법상 보험업

- 생명보험 : 생명보험, 연금보험(퇴직보험 포함) 등
- 손해보험 : 화재, 해상, 자동차, 보증, 재, 배상책임보험 등
- 제3보험 : 상해, 질병, 간병보험 등

□ 경영의 제한

- 손해보험 vs 생명보험 경영 불가
- 제3보험 경영가능

보험회사 관련 법률

④

□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

- 보증보험, 재보험 : 300억원
- 자동차보험 : 200억원
- 해상보험 : 150억원
- 화재보험, 책임보험, 상해질병간병 : 100억원
- 기술보험, 부동산권리보험, 기타 : 50억원 (일부만 하는 경우 50억원 이상)
- 외국보험사 : 30억원
-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: 90% 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
보험업법 자본금의 3분의 2이상
-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: 20억원 ; 생명 질병 상해 가능
(자동차, 화재, 해상, 연금, 간병제외)

□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

- 적용 :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(자동차 임의보험 포함)
퇴직보험 외 법인계약 제외
- 출연 : 별도로 정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
- 보험금 지급 : 예금자보호제도 5천만원 차감
1인당 1억원 한도(지급불능금액의 80%)

보험관련 기관

④

□ 보험관련 기관

- 금융위원회 :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
금융정책, 금융기관 인허가 등
- 금융감독원 : 금융기관의 검사,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
- 보험개발원 : 손보험료의 산출, 검증
- 손해보험협회 : 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
보험모집인 등록
- 보험연수원 :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, 손해사정사 연수

©

손해보험설계사 공통 핵심특강 5강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

강사 : 백영

□ 공통사항

- 제1강 : 모집종사자의 이해 4문제
- 제2강 : 손해보험 기초 이론 2문제
- 제3강 :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제
- 제4강 :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4문제
- 제5강 :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**4문제**

- 3대 기본지키키 : 미준수 3개월 이내 취소 가능
 - 청약서 등 자필서명 :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청약서 부분 전달 : 계약자 동시기 전자적 방법, 전자우편도 가능
 - 약관의 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
- 모집자실명제 및 상품설명제
 - 모집자실명제 : 상품설명서, 청약서,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, 성명, 연락처 기재(주민번호 X)
 - 모집자실명제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상품설명제 :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확인 전화모집의 경우 녹취 가능
이미 가입된 보험과 동일하게 갱신시 생략가능

- 보험료 영수제도
 -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 보험료 수납
 - 현금수납 원칙
 - 선일자수표, 은행도어음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결제되는 것
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처리
 - 해외에서 송금되는 경우 현지관례에 따를 수 있음
- 단계별 설명의무
 - 계약체결 권유단계 :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
(보장, 보험료, 고지의무, 해약환급금 등 / 청약철회 X)
 - 계약체결 단계 : 계약 체결에서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과정 설명
(모집종사자 성명, 연락처, 주소 / 송납절차, 대리권 여부)
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생략 가능
 - 보험금 청구단계 : 담당 부서, 연락처
 - 보험금 지급요청 : 지급내역, 미지급사유

- 실손의료보험 판매
 - 실손의료보험 : 사람의 상해, 질병, 간병에 관한 의료비의 보상(위자료 X)
보상 :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+ 비급여항목
 - 중복가입 여부 확인(의료비조회 동의서)
- 통신판매 준수사항
 - *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도 자격을 갖춘 자
 - *계약확인, 해지시에도 통신수단으로 가능(계약자 본인 확인)
 - *설명 등은 녹음 등으로 증명
청약서 자필서명은 팩스나 우편으로 처리

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

⑤

□ 보험안내자료

- 계약체결 권유 단계 : 상품설명서
(전문보험계약자, 갱신계약 생략 가능)
- 계약 청약 단계 : 청약서 부분, 약관, 증권
-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: 여러 주요사항, 보험료 할인 (X)

□ 특별이익 제공금지

- 가능 : Min(1년 보험료 10%, 3만원)
-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
- 처벌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2천만원 X)

□ 기타 금지

- 경유계약 :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;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승환계약 :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청약
- 무자격자 모집 : 회사에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금

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

⑤

□ 자율 규제

- 손해보험협회 운영 : 제재금
- 특별이익 제공
*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: 최저 100만원 최고 3천만원
*특별이익 제공 약속 : 최저 100만원 최고 1천만원
- 무자격자 모집 : 최고 3천만원

□ 보험계약정보의 보호

- 보험계약정보(개인 신용정보)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*보험협회, 보험개발원, 보험모집인 (금융결제원 X)
*서면 등의 방법(구두 X)
- 상품소개 등 영업목적에 위한 개인정보 제공 : 고객은 동의를 철회 가능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 제공, 이용 : 동의필요 / (취미나 쿠키정보 X)
- 개인정보 불필요하게 된 경우 : 영구삭제, 파쇄, 소각 (사본보관 X)

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

⑤

□ 장애인차별금지

-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가입 심사
- 처벌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시정권고 : 국가인권위원회
- 시정명령 : 법무부장관

□ 장애인,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

- 운영 : 손해보험협회 (금융감독원X)
- 신고 :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 거절 시
- 신고자 : 장애인, 장기기증자, 그 대리인 (보험회사 직원 X)

©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6강 화재보험의 이해

강사 : 백영

3편 목차

⑥

□ 3편 손해보험

제1장 : 화재보험의 이해	3문제
제2장 : 해상보험의 이해	
제3장 : 특종보험의 이해	2문제
제4장 : 장기손해보험의 이해	4문제
제5장 : 연금저축보험의 이해	2문제
제6장 : 퇴직연금의 이해	1문제
제7장 : 자동차보험의 이해	5문제

화재보험의 의의

⑥

□ 화재보험

- 주택화재보험 : 화재, 벼락, 폭발, 파열 등
- 일반화재보험 : 화재, 벼락 등

□ 보상하는 손해

- 재산손해
 - *직접손해 : 화재, 벼락으로 인한 손해 (주택은 폭발, 파열손해 보상)
 - *소방손해 :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
 - *피난손해 :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 (피난 중 도난 분실손해 X)
- 비용손해
 - *잔존물제거비용, 손해방지비용, 대위권보전비용 등 (임시생활비용X)

화재보험 특징

⑥

□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고의나 중과실 (타인의 고의는 보상)
- 도난, 분실손해
- 자연발열, 자연발화
- 수도관 파열
- 발전기 등 전기기기 사고 (그로 인한 화재는 보상)
- 지진, 전쟁, 핵연료물질 등

□ 계속계약 보험요율 할인

- 동일한 보험회사, 동일 구내의 위험
- 보험기간 1년 (1년 초과 X)
- 계속하여 갱신 시 연 보험요율의 95% 적용(5% 할인)
- 중도해지 후 체결한 신계약 적용 불가

□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요율 할인

- 1년 초과 2년 미만의 장기계약요율 : 연요율 x 175% x 2년계약요율

주택화재보험

⑥

□ 보험목적물 범위

- 주택 : 단독, 연립, 아파트
- 주택비용 : 교습소(피아노 등), 치료(조산원 등) 기숙사 X, 오피스텔 X
- 자동담보물건 : 건물의 부속물 및 부착물
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
- 명기물건 : 통화, 유가증권, 골동품, 옥의 쌓아둔 동산 등은 증권에 명기

□ 주택화재 지급보험금 계산

- 보험가액의 80% 이상 가입 : 실손
- 보험가액의 80% 미만 가입 :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/ 보험가액 X 80%
-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재산손해
1억 8천만 2천만
9천만 1억 3천만

주택화재보험

⑥

□ 비용손해보험금

- 잔존물 제거비용 : 재산보험금 계산방법 / 재산손해액 10% 한도
- 손해방지, 대위권보전, 잔존물보존비용 : 재산보험금 계산방법 / 보험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
- 기타 협력비용 : 전액(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)

계산사례) 화재보험금, 잔존물 제거비용

보험가입금액 1억
보험가입금액 4천만
재산손해 1천만
잔존물제거비용 4백만

*화재보험금 1천만 x 4천만 / 8천만(1억의 80%) = 5백만

*잔존물제거비용 4백만 x 50% = 2백만 → 재산손해 10%까지 즉 1백만

화재보험

⑥

□ 일반화재보험

- 일반물건 : 주택물건, 공장물건을 제외한 물건
 병용주택, 오피스텔, 기숙사
- 공장물건 : 공장, 공장 구내 기숙사, 옥외 쌓아둔 동산 등
- 일반물건 지급보험금 : 폭발, 파열손해 빼고 주택화재와 동일

□ 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

- 보험목적의 소재지, 건물 내 영위직업 또는 작업
(피보험자의 나이, 직업X)
-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다른 보험가입 등

□ 계약 후 알릴의무(통지의무)

- 위험의 변경 및 증가
- 양도
- 30일 이상 비워두는 경우 / 15일 이상 수선 등

화재보험

⑥

□ 사고발생시의 의무(손해경감의무)

- 계약자(피보험자)가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은 차감하고 보험금 지급

□ 기타사항

- 책임의 시기 :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때
- 보험회사의 해지권 :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시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

□ 특별약관

- 보통약관 담보 외 추가 : 도난위험담보특약 등
- 풍수재위험담보특약 : 태풍, 폭풍우, 해일 등 (폭설 X)

특수건물화재보험

⑥

□ 특수건물화재보험

- 대상 :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
 11층 이상 건물
 바닥면적(연면적) 2,000m² 이상인 학원
 바닥면적(연면적) 3,000m² 이상인 숙박업 (2,000X)
-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보상범위
 *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인당 1.5억원 까지
 *부상 시 3천만원 까지

□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

- 가입 : 다중이용업소 업주
- 주요 가입대상 업소 : 노래연습장, PC방, 단란주점 등 (미술관X)
- 보상한도 : 사망(후유장애)은 1.5억, 부상은 3천만까지 / 재산피해 10억 한도
- 특수건물 내 입점 시 제외

*기타 : 재난배상책임보험, 풍수해보험

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7강 특종보험의 이해

강사 : 백영

3편 목차

⑦

□ 3편 손해보험

제1장 : 화재보험의 이해	3문제
제2장 : 해상보험의 이해	
제3장 : 특종보험의 이해	2문제
제4장 : 장기손해보험의 이해	4문제
제5장 : 연금저축보험의 이해	2문제
제6장 : 퇴직연금의 이해	1문제
제7장 : 자동차보험의 이해	5문제

배상책임보험

⑦

□ 특종보험

- 전통적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달리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

□ 배상책임보험

- 개인의 일상생활, 기업의 영업활동 중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손해를 보상

- 임의배상책임보험 vs 의무배상책임보험

*임의 :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, 생산물배상책임, 임원배상책임보험

*의무 : 가스사고, 유도선사업자, 체육시설업자, 학원, 다중이용업소 등

- 손해사고기준 vs 배상청구기준

*손해사고기준 : 시설, 선주, 경비업자 등

*배상청구기준 : 임원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

배상책임보험 특징

⑦

□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고의
- 전쟁, 테러 등

□ 배상책임보험 종류

-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

*가스제조, 판매, 가스용기제조업자 / 가스용기운송업자 X
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임의

-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: 의무 ; 골프장O, 골프연습장 X

- 기타 배상책임보험 : 특약으로 운영

도난, 레저보험

⑦

□ 도난보험

- 의의 : 보험에 가입한 동산이 증권에 기재된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도난, 파손 손해보상
- 보상하지 않는 손해
 - *고의, 중과실
 - *사기
- *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
- *30일 이내 발견하지 못한 손해

□ 레저종합보험

- 의의 :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, 용품손해, 배상책임손해 담보 (용품의 분실손해 X)
- 기간보험 성격 : 테니스, 골프, 수렵 (레저중)
- 구간보험 성격 : 낚시, 스키 (출발 후 도착 기간)

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등

⑦

□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

- 의의 : 유아교육기관의 경영자, 교사, 피교육생이 처할 수 있는 위험보장
- 보상하는 손해
 - *재산손해 : 교육기관 건물, 동산의 화재손해 등
 - *상해손해 : 유아원생(교사 X) 상해
 - *교육기관 생활 중 사고(등하교 포함)

□ 동산종합보험

- 의의 : 동산에 발생하는 화재, 도난, 파손, 폭발, 잡위험 등 전위험담보(ALL Risk담보) 방식의 보험
- 보험가입 제외 : 자동차, 공장 내 기계 등(리스물건은 가입가능)
- 잡위험 제외 : 연기손해, 차량의 충돌, 건물의 붕괴 등

여행보험

⑦

□ 여행보험

- 여행 중 생긴 사고 보장
- 보험기간 : 기간보험 + 구간보험 성격

□ 보상하는 손해

- 보통약관 : 상해사망, 상해후유장해
- 특별약관 : 질병사망(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), 후유장해, 실손의료비, 휴대품손해보험금(분실손해 X)

□ 실손의료비 보장(회사별 차이)

- 해외상해의료비 : 가입금액 한도
- 기타 의료비

컨틴전시보험

⑦

□ 컨틴전시보험

- 의의 : 특정한 사건이 현실화 되었을 때 손실을 보상
- 종류 : 스포츠시상보험
 - 날씨보험
 - 행사취소보상보험 (복권보험 X)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8강 장기손해보험의 이해

강사 : 백영

3편 목차

⑧

□ 3편 손해보험

제1장 : 화재보험의 이해	3문제
제2장 : 해상보험의 이해	
제3장 : 특종보험의 이해	2문제
제4장 : 장기손해보험의 이해	4문제
제5장 : 연금저축보험의 이해	2문제
제6장 : 퇴직연금의 이해	1문제
제7장 : 자동차보험의 이해	5문제

장기손해보험 특징

⑧

□ 장기손해보험

- 보험기간 3년 이상
- 위험보장 + 저축기능

□ 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

- 보장성보험 : 보험기간 제한 없음
100세 만기 가능, 순손보장성도 가능
- 저축성보험 : 보험기간 15년 이내

□ 특별계정 운용

-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: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 운용
(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미포함)
- 특별계정 운용 : 개인연금(연금저축), 퇴직보험(퇴직연금), 장기손해보험

장기손해보험 특징

⑧

□ 환급금 지급제도

- 만기환급금 : 보험료 완납과 보험기간 만료 / 저축보험료를 재원
-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

□ 자동복원제도

-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원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
-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% 미만인 경우
- 화재보험이 일반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 자동복원 X

□ 보험료 납입

- 납입주기, 납입방법 다양
- 3개월 이상 선납 : 예정이율로 할인

□ 납입최고(독촉)

- 제2회 이후 납입부터 적용
-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(독촉)
-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지

장기손해보험

⑧

□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

-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내
- 연체이자 포함 납입 + 보험회사 승인
- 부활 후 회사의 책임개시는 약관에서 정함

□ 보험계약 대출제도

- 해지환급금 범위 내 (순수보장성 불가)
-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대출기간도 만료

□ 계약의 철회, 취소, 무효 → 손해보험 법규파트와 동일

- 철회 :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은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
(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- 취소 : 약관 및 청약서부분 미전달, 설명의무 미이행, 자필서명 누락
→ 3개월 이내 취소가능

*청구권의 소멸시효 : 3년 ; 보험금청구권, 보험료반환청구권, 적립금반환청구권
2년 ; 보험료청구권

장기손해보험 보험료

⑧

□ 보험료 구성

- 영업보험료 = 순보험료 + 부가보험료
- *순보험료 = 위험보험료 + 저축보험료
- *부가보험료 = 신계약비 + 유지비 + 수금비

- 보험료 계산의 3요소

- *예정위험률 → 위험률차손익
- *예정사업비율 → 비차손익
- *예정이율(예정이익률 X) → 이차손익

- 책임준비금 :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
(법정적립금)

장기손해보험 보통약관

⑧

□ 보험계약의 성립

□ 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

□ 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 ; 재산보험

-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
- 보험목적물 양도
- 30일 이상 비우거나 휴업
- 15일 이상 수선
- 위험이 증가

□ 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 ; 신체 상해보험

- 피보험자 직업, 직무 변경
- 이륜자동차 직접 사용

□ 계약내용 변경

- 회사의 승낙으로 변경 : 계약자변경 불가능(X)

장기손해보험

⑧

□ 보험금 등 지급

- 만기, 중도환급금 지급 : 3영업일 이내
- 지급사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표준이율 50%, 1년 초과 1% 적용

- 보험금 지급 : 신체손해보험금 3영업일 이내
배상, 재산손해보험금 7일 이내(보험금 결정 후)

- 가자금보험금 : 조사 등으로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%를 미리 지급

장기손해보험 상품

⑧

□ 장기화재보험

- 보험의 목적과 범위 = 화재보험과 동일
예) 주택겸용 피아노교습소 주택물건
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물건
- 약관상 인수제한물건
*통화, 유가증권, 자동차(전시자동차 포함),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
- 장기화재보험 보험료 산출 고려사항 : 건물의 구조, 급수 / 업종
(주택소유자의 직업 X)

©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9강 연금저축보험의 이해

강사 : 백영

3편 목차

⑨

□ 3편 손해보험

제1장 : 화재보험의 이해	3문제
제2장 : 해상보험의 이해	
제3장 : 특종보험의 이해	2문제
제4장 : 장기손해보험의 이해	4문제
제5장 : 연금저축보험의 이해	2문제
제6장 : 퇴직연금의 이해	1문제
제7장 : 자동차보험의 이해	5문제

연금저축보험 특징

⑩

□ 연금저축보험

- 법률근거 : 소득세법 (조세특례제한법 X)
-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의 세액공제 가능 상품 (연금보험과 별개)

□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

- 가입대상 : 연령제한 없음
- 불입한도 : 연간 1,800만원
- 납입기간 : 5년 이상
- 연금수령 : 55세 이후, 가입일 5년 이후 수령, 연간한도이내 수령

□ 연금저축보험의 세제

-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: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 운용
(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미포함)
- 특별계정 운용 : 개인연금(연금저축), 퇴직보험(퇴직연금), 장기손해보험

연금저축보험 특징

9

□ 연금저축보험의 세제

- 연간 납입보험료 세액공제(연간 400만원 한도)
(종합소득 1억 초과 : 300만원 한도)

- 연금소득세(지방소득세 별도)

*70세 이전 수령 : 5%

80세 이전 수령 : 4%

80세 이후 수령 : 3%

*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 : 기타소득세 15%

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= (연금계좌 평가액 / 11-연금수령연차)*120%

- 선택적 분리과세 : 연간 연금수령액 1,200만원 이하 / 초과 시 종합과세

-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

*계약자 사망, 해외이주, 파산

천재지변

부상,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

퇴직연금 적립금 운용

9

□ 적립금(자산) 운용방법

- 자산운영계약 형태 : 보험계약(보험회사), 신탁계약(은행, 증권회사)

- 운용 가능한 자산

*예금, 적금

*보험계약

*유가증권 : 주식, 채권, 수익증권 등 (복권기금운용X)

- 부담금 : 100% 이상 사외적립

□ 퇴직연금 중도인출(DB형은 불가)

- 무주택자 주택구입, 전세금

-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(cf ; 연금저축 3개월)

- 5년 이내에 파산, 개인회생

- 인출순서 : 과세제외금액 → 이연 퇴직소득 → 그 밖의 금액

퇴직연금

9

□ 퇴직연금제도 의의

-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 (국민연금기금 고갈 대비X)

- 일시금 보다는 연금수령 장려

-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

- 근거법규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
□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

1)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(DB : Defined Benefit)

-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(사용자 운용책임)

2)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DC : Defined Contribution)

-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

-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

3)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 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
-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 활용

- 2017년부터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

퇴직연금 주요 내용

9

□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

- 보험회사, 은행, 증권회사, 신탁중앙회, 새마을금고연합회 등

- 우체국 X, 저축은행 X

□ 세제혜택

- 근로자 퇴직연금납입액 세액공제 : 연간 700만원 한도

(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 적용)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10강

자동차보험의 이해

강사 : 백영

3편 목차

10

□ 3편 손해보험

제1장 : 화재보험의 이해	3문제
제2장 : 해상보험의 이해	
제3장 : 특종보험의 이해	2문제
제4장 : 장기손해보험의 이해	4문제
제5장 : 연금저축보험의 이해	2문제
제6장 : 퇴직연금의 이해	1문제
제7장 : 자동차보험의 이해	5문제

자동차보험

10

□ 자동차보험의 특성

- 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생활안정,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
-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
- 할인할증제도를 통한 사고예방기능
- 적립된 보험료는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산업자금조성에 기여
-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로 형사처벌 경감 가능(모든 X)
- 피해자 보호기능 수행(피해자 직접청구권 :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)

□ 자동차사고와 책임

- 민사상 책임 : 손해배상책임
- 행정상 책임 : 범칙금, 면허정지/취소
- 형사상 책임 : 업무상 중/과실치사상죄

민사상 책임

10

□ 민법(불법행위책임 + 사용자책임)

- 불법행위책임 : 고의/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
- 사용자책임 :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

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- 손해배상 책임 주체 : 운전자 (운전자 X)
-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 불충분 / 민법의 특별법
-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면책조건(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)
- *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고 제3자의 고의, 과실이 있음을 증명
- *입증책임 : 가해자(운전자)

*형사상 책임 : 대인, 대물사고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
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우선 적용

형사상 책임

10

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

- 반의사불벌 : 가해자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음
- 보험가입특례 :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으로 손해 모두 배상시 공소제기 불가

- 비적용 : 사망사고, 사고 후 도주, 중상해, 12대 중과실/중상해
- 12대 중과실 사고
- *신호 및 지시위반
- *중앙선 침범
- *제한속도 시속 20km 이상 초과(10km X)
- *주취운전 : 호흡 중 알콜농도 0.03%(0.05X) 이상 등

- 무면허운전
- *미취득, 면허정지/취소, 면허 미허가차량
- *외국 운전면허를 국내면허나 국제면허로 미변경

□ 행정상 책임

- 범칙금, 면허정지/취소 (종합보험 가입과 행정상의 책임은 별개)

자동차보험 계약

10

□ 보험계약의 성립

-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승낙/거절 (통지가 없으면 승낙)
- 승낙 전 발생사고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상

□ 보험기간

- 일반 :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; 예) 2월 1일 ~ 익년 2월 1일
- 첫 가입 하는 자동차 : 보험료를 받은 때 ~ 마지막 날 24시

□ 담보종목

- 대인배상1 : 자배법 손해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
- 대인배상2
- 대물보상
- 자기신체사고(자손)
- 자기차량손해(자차) : 피보험자동차 파손, 도난손해
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

자동차보험 의무보험

10

□ 의무보험

- 비사업용자동차 : 대인배상1 +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
- 사업용자동차 : 대인배상1 +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+ 대인배상2 1억원 이상

□ 의무보험 특징

- 자동차 보유자 의무가입
- 보험회사의 인수 강제 :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 불가
- 계약해지의 제한 : 말소, 양도시 등은 가능(상속 X)
- 피해자 직접청구권
- 유한보상제 : 대인배상1 유한(1사고당 한도는 무) / 대물배상 2천만원
- 가불금, 우선지급금, 가지급보험금 운영

□ 의무보험 가입대상

-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(50cc미만 이륜차 포함)
- 의무가입건설기계(무한궤도식 제외)
- 제외 :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차, 미군차량 등

자동차보험 의무보험

10

□ 의무보험 보상한도

- 대인배상1 한도
- *사망(1인당) : 1.5억 / 부상 : 3천만 / 후유장애 1.5억 / 1사고당 무한
- *대물배상 : 1사고당 2천만원

□ 보험계약의 승계

- 보험회사 승인으로 승계
- 의무가입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까지는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

□ 의무보험 미가입

- 의무보험 미가입 : 과태료 부과
-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: 형사처벌(징역 혹은 벌금)

- 법원의 상속포기를 받은 경우
- 차량 도난을 신고하고 서류로 입증한 경우

종합보험(임의보험)

10

□ 종합보험 특징

-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 초과손해분 보상
- 대인배상2 무한 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(모든 사고 X)
- 자동복원 : 자기차량 전손사고 X

□ 피보험자 범위

- 기명, 친족피보험자 등
- 승낙피보험자 :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, 관리하는 자
- *승낙피보험자 제외 : 정비업, 주차장업, 대리운전업자 등

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

- 가입 : 대인1,2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가입자
-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

□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

- 다른 자동차 범위 : 개인용자동차보험은 1, 2종 승합자동차 불가

자동차보험 계약실무

10

□ 비사업용 자동차 종류

- 승용자동차 : 소형, 중형(1,600 ~ 2,000cc), 대형, 다인승(10인 이하)
- 승합자동차 : 1종 26인 이상, 2종, 3종, 경승합
- 화물자동차 : 1종, 2종(2.5톤 ~ 5톤), 3종, 4종, 경화물 (현금수송차 X)
- 이륜자동차
- 특정용도 자동차 : 이동진료차, 이동도서관, 소독차 등 (청소차 X)
- 9종(의무가입) 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(화물차 X) 등
- 일반건설기계 : 무한궤도식, 타이어식
- 농기계

*구조 및 장치변경이 있는 경우 : 최초 신규등록 시 분류에 따름

*전방조종자동차 : 앞부분과 조향핸들 거리가 자동차 길이 1/4 이내

*소방차는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 10인 이하 승용차, 11인 이상 승합차 분류

□ 사업용 분류

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산정

10

□ 자동차보험 기본 용어

- ① 기본보험료 : 차량 종류, 배기량,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기본적 보험료
 - ② 가입자특성요율 : 가입기간, 법규위반 경력 등 고려
 - ③ 특약요율 : 가족한정특약 등
 - ④ 특별요율 : 구조나 운용실태가 다른 경우
 - ⑤ 우량할인, 불량할증 : 사고발생, 손해실적에 따라 할인, 할증
 - ⑥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: 3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
- 납입보험료 : 위 사항 모두 적용

*보험가입 경력 인정
외국에서 보험가입경력
군운전병 경력
법인체 운전직 근무

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산정

10

□ 자동차보험료 적용요소

- 가입자특성요율 : 보험가입경력요율 +-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/ 보험사 자율
- 단체 할인할증 : 역년 기준 3년간 평가
영업용 10대 이상, 업무용 50대 이상
- 개별 할인할증 : 담보종목별 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 적용
- 사고내용별 점수
- *사고점수가 1점 이상일 때 할증적용
- *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: 건당 1점
-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: 건당 0.5점
- 예)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며 대물손해 120만원, 자차손해 80만원 ; 0.5점

□ 특약요율

- 가족운전자한정 : 부모,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자녀 등 / 형제자매 X
- 운전자연령한정 : 사고 당시 만 연령기준

자동차보험 보상 ⑩

□ **대인배상2** :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

1) 사망보험금 (장례비 + 위자료 + 상실수익액)

- 장례비 : 5백만원
- 위자료 : 65세미만 8천만원, 65세이상 5천만원
(청구권자 : 민법 상속규정을 따르나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 포함)
- 상실수익액 = (월소득액 - 생활비) x (사망일에서 보험금지급일까지 월수 + 취업가능월수 호프만계수)
- *취업가능연한 : 65세 (60 X)

2) 부상보험금

- 구조수색비, 치료관계비, 위자료
- 휴업손해 :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%
예) 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x 휴업기간 10 → 85만원
- 간병비, 기타 손해배상금

3) 후유장해보험금

- 위자료, 상실수익액
- 가정간호비(노동상실률 100%)

자동차보험 보상 ⑩

□ **대물배상**

- 수리비용 : 사고직전 가액의 120% 한도
- 교환가액 : 폐차시(취등록세 포함)
-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: 출고후 5년 이하 1년 이하 ; 수리비 20%
(수리비가 자동차 가액 20% 초과시) 2년 이하 ; 수리비 15%
2년 초과 ; 수리비 10%
- 대차료 : 비사업용인 경우 / 미대차 시 렌트비 35% / 30일 한도
- 휴차료(사업용), 영업손실

□ **자기신체사고**

- 사망보험금 / 부상보험금 : 상해등급별
- 면책 : 고의, 반복적 대여, 경기 연습용, 전쟁 등

□ **자기차량손해**

- 전손 자동복원 안됨 / 도난시 신고 30일 후
- 태풍,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등
- 면책 : 장착된 부분품, 자연소모, 타이어에만 손해, 전쟁 등

자동차보험 보상 ⑩

□ **과실상계**

- 과실상계 :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
(대인배상1 사망보험금이 과실상계 후 2천만원 미달시에는 2천만원)
- 기왕증 :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부분에 대해서는 미보상

□ **가지급금(가불금)**

- 지급할 금액의 50%

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⑩

□ **보장사업, 지원사업**

-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나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
- 주무부처 : 국토교통부 (금융감독원 X)
- 청구처 : 손해보험회사 / 3년 이내
- 보상금액 :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기준 / 대물보상 X
- 구비서류 :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 발급), 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
주민등록등본 X

□ **교통사고 과실분쟁**

-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
- 법원
- 금융감독원
- 경찰 (X)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11강

제3보험과 상해보험 이해

강사 : 백영

4편 목차

11

□ 4편 제3보험

제1장 : 제3보험의 개요	5문제
제2장 : 상해보험의 이해	8문제
제3장 : 질병보험의 이해	3문제
제4장 : 간병보험의 이해	1문제

제3보험의 개요

11

□ 제3보험의 정의

- 손해보험(실손보상)과 생명보험(정액보상) 성격을 함께 가짐 / Gray Zone
- 생보사, 손보사는 제3보험 겸영 가능
- 보험사고 : 신체의 상해, 질병, 간병
- 피보험이익 : 원칙적으로 없음(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)
- *사람의 상해, 질병,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 혹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 (X)

□ 제3보험의 구분

- 상해보험 :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 비용 및 사망보장
- 질병보험 : 질병발생 및 그로 인한 입원, 수술, 통원 등 보장(질병사망 X)
- 간병보험 :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애 등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

□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
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 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제3보험 관련 법규

11

□ 상법상의 지위

-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라는 용어 없음 / 제3보험 상법상 인보험

□ 보험업법상 근거 (보험계약법 X)

- 3보험업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 (생보나 손보의 일부 X)
- 3보험 허가 : 금융위원회
- *제3보험만 영위 가능
- *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

제3보험의 특징

11

□ 제3보험의 특징

- 경영 : 생보, 손보는 겸영금지이나 제3보험은 겸영허용
- 질병사망특약 요건
 - *생명보험 : 보험기간 제한 없음 / 보험금액 제한 없음
 - *손해보험 : 보험기간 80세까지 / 보험금액 2억원
- 보험금의 지급방법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
- 피보험이익 : 손해보험에서 존재하는 개념(실손보상이 가능한 제3보험 존재)

□ 제3보험 보상방식

- 실손보상 : 의료실비담보(입원/통원의료비) ; 비례보상
- 정액보상 : 사망/후유장애 담보, 진단급여, 수술급여, 입원일당 급여 ; 중복보상

□ 제3보험 가입제한

- 상법에 의한 가입제한(무효사유)
- *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,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계약

제3보험의 특징

11

□ 제3보험 상품구성

- 기본계약 또는 특약으로 운영
- 개인계약 또는 단체계약
-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담보, 질병담보, 간병담보를 2개 이상 복합 운영 가능
- 기본계약(주계약)에서 질병사망 담보 불가

□ 제3보험 상품개발 기준

-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
- *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15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축성보험 가능
-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
-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며 실손보상은 비례보상
- *실손담보의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불가

상해보험

11

□ 상해보험 의의

-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 보장 상품
- 상해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명보험보다 많음

□ 상해사고의 요건 (3가지 동시 충족)

- 1) 우연성 :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
- 2) 외래성 : 신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기인
- 3) 급격성 :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

*필연성 X, 내재성 X, 질병으로 유발된 사고 X

□ 보험가입금액 vs 보험가액

- 보험가입금액은 있으나 보험가액은 없음
-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내 (보험가액 X)
-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

상해보험

11

□ 보험자 대위

- 인보험은 보험가액이 없어 불인정
- 상해보험은 보험자 대위 인정

□ 타인(피보험자)의 동의

-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경우 : 타인(피보험자) 동의
-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계약 권리를 양도(단체보험은 생략 가능)

□ 보험수익자의 지정

-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고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함(보험수익자의 지정, 변경 권한 : 보험계약자)

□ 중대한 과실의 담보

-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중대한 과실을 보험회사가 보상
- 상해보험회사의 면책 : 고의

상해보험의 특성

11

□ 직업등급

- 상해1급 사무직근로자 등
- 상해2급 항공기정비공 등
- 상해3급 영업용자동차 운전자 등
- 보험료(위험도) 크기 : 1급 < 2급 < 3급

□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고의 / 우연한 유독물질 흡입은 보상하나 상습적 흡입은 보상 불가
-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
- 전쟁 등 / 천재지변(지진 등)으로 인한 상해 보상
- 전문등반, 자동차 경주(공영도로에서 시운전은 보상)
- 선박승무원의 직무상 탑승 중 손해
- *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치과/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(급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보상)
- 친자확인, 외모개선
-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
-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

보험금 종류

11

□ 사망보험금

-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의 결과로 사망(보험수익자 수령)
- 관공서에서 수해 등 재난으로 사망 통보(가족관계등록부 사망연월일 기준)

□ 후유장애보험금 (정액보상)

-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상 장애상태
- 한시후유장애 :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 20%
- 장애율 : 연령, 신분, 성별에 무관하고 장애분류표에 따라
- 동일한 상해,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 후유장애 :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
-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 : 높은 지급률 적용

□ 진단보험금, 입원보험금, 수술보험금, 간병보험금 (정액보상, 중복가능)

- 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80일 한도

보험금 종류

11

□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(4세대)

-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
- 기본형 : 상해/질병 입원, 통원 ; 연 5천만원 한도
통원 회당 20만원 한도
- 특별약관 : 상해비급여, 질병비급여,
3대비급여(도수치료, 주사료, 자기공명영상진단)

□ 가입자의 자기부담금

- 상해/질병급여 :
입원은 보장대상의료비의 20%
통원은 보장대상의료비의 20%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1,2만원 중 큰 금액
- 상해/질병비급여 :
입원은 보장대상의료비의 30%
통원은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

보험금 종류

11

□ 상해급여의료비

- 입원 : 본인부담금 80%에 해당하는 금액
- 통원
*보건소 :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*상급종합병원 :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-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: 180일 이내, 90회까지 보상

□ 노후, 유병력자

- 노후 실손의료보험 : 65세 이상 가입 가능
-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: 일부 유병력자도 가입 쉽게

□ 보험금 지급

- 서류 접수 3영업일 이내 지급
-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50%를 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

기타 상해보험

11

□ 교통상해보험

- 운전자형
- 비운전자형
- 자동차 : 이륜자동차 포함 (작업중인 건설기계는 자동차 X)
- 기타교통수단 : 기차, 에스컬레이터, 스쿠터, 자전거 등
- 보상하지 않는 손해 : 시운전, 하역작업, 정비, 도로운행이 아닌 작업중 손해

□ 휴일교통상해보험

- 보상 : 토/일요일, 법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
- 보험책임의 시기 및 종기 : 사고발생지 기준
보험기간 내 휴일 0시부터 보험책임 종기일 24시

□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

- 보상 : 탑승, 승하차, 승강장 탑승대기 중 사고
- 대중교통 : 항공기, 버스, 기차, 택시 등 / 전세버스와 렌트가 제외

기타 상해보험

11

□ 단체상해보험

- 1종 단체(급여단체) : 동일 회사 5인 이상 근로자
- 2종 단체(법정단체) : 비영리단체, 동업자단체 (예 : 의사회)
- 3종 단체(규약단체) : 일괄 관리가 가능한 단체
- 계약자는 피보험자 변경가능
- 타인 사망계약도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생략 가능

◎

손해보험설계사 핵심특강 12강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이해

강사 : 백영

4편 목차

12

□ 4편 제3보험

- 제1장 : 제3보험의 개요 5문제
- 제2장 : 상해보험의 이해 8문제
- 제3장 : 질병보험의 이해 3문제
- 제4장 : 간병보험의 이해 1문제

질병보험의 개요

12

□ 질병보험의 의의
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입원, 수술 등 보장
- 질병사망은 제외 (특약에서 보장)
- 신체 내재적 원인 / 상해의 외래성과 구분

□ 한국표준질병/사인분류

-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이 공고 (보건복지부 X)
- 최근 개정고시 :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2021년 1월)

질병사망보험의 특수성

12

□ 상품요건

-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사망 보장은 특약으로 부가하며 다음 요건 충족
- *보험만기는 80세 이하
- *보험금액 2억원 이내
- *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이내(보장성보험 요건)

□ 무효사유

-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만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(청각, 시각장애인 X)
-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 서면동의 (단체보험은 제외)
-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사고 확정

□ 질병보험의 종류

- 정액보장 : 질병사망, 질병후유장해, 질병진단비, 질병입원비, 질병수술비 등 (상기 담보를 특화하여 암보험, CI보험, 치아보험, 어린이보험 개발)
- 실손보장 : 질병입원치료비, 질병통원치료비

질병보험의 특징

12

□ 피보험나이 계산

- 만연령으로 계산
-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 (예 : 34년 10개월 → 35세)
- 질병보험은 연령별 보험료 차이 (상해보험은 직업, 직무상 차이)

□ 대기기간 설정

- 암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서는 대기기간(90일) 중 암진단 시 특별약관 무효 (납입한 보험료 환급)
- 역선택방지
- 암보험 대기기간 미설정 : 제자리암, 갑상선암 등 15세 미만자

질병보험 보상

12

□ 질병보험 보상

- 청약일 이전 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간 추가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장
-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*고의
- *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악화된 부분

□ 질병사망보험금(정액보상)

- 보험기간 중 질병의 결과로 사망
- 질병으로 80%이상 후유장해 시

□ 후유장해보험금 / 실손의료비

- 치료종결 후 한시적 장해 : 5년 이상 시 장해지급률의 20% 적용

□ 실손보장

- 실손의료보험

질병보험의 종류

12

□ 암보험

- 암보험금(정액) 종류

*암진단급여금 : 최초 1회(상품에 따라 2차암 이후도 보상)

*암사망보험금 : 암사망, 암으로 인한 80% 이상 장애상태

*암수술급여금 : 직접 치료목적

*암입원급여금 :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회당 최고한도일은 보상
요양목적 입원은 보상 안됨

□ 치명적 질병보험(CI보험)

- 치명적 질병 : 암, 뇌졸중, 심근경색 등 고액 치료비가 드는 질병 보장
중대한 화상 및 부식 보장

- 사망보험금 선지급 : 잔여수명 6개월 이하의 치명적 질병 발생시
사망보험금 50% 선지급 (보험료 납입면제)

질병보험의 종류

12

□ 어린이보험

- 가입연령 : 0세에서 15세

- 어린이보험에 특약을 더해 출산시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실무적으로
태아보험이라고 함

□ 치아보험

-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

-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운영

간병보험

12

□ 장기간병보험

- 활동불능,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치료 등의 위험 보장

□ 간병보험의 필요성

- 고령화, 간병의료비 부담 증가

□ 보험금 종류

1) 장기요양급여금

-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: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, 4등급까지 지급
1등급이 가장 심한 등급

2) 치매간병비

- 중증치매상태 :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
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

보험금 대리청구인

12

□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

-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미리 지정

- 보험계약자 = 피보험자 = 보험수익자 경우

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